

1. 개정이유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을 완화·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안 별표1)

* 지정내역 : 곰소만('64.1.1./9,820ha), 금강하구('76.9.7./11,280ha)

나. 어업규제 개선을 위해 금어기 2종(소라, 우뚝가사리) 완화, 금어기 14종(개서대, 털게, 닭새우, 펼닭새우, 백합, 전복류, 코끼리조개, 오분자기, 개다시마,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도박류, 뜸부기) 폐지, 금지체장 9종(개서대, 황돔, 황복, 털게, 닭새우, 펼닭새우, 백합, 마대 오분자기·오분자기, 전복류) 폐지 추진(안 별표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마목 및 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라목, 마목 및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라남도 여주시 삼산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별표 1 제5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주1) 및 주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사목 및 머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라목 및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 <삭제>		
2.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어류	가. <삭제>	
3. 갑각류	라.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갑각류	라. <삭제>	
	마.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 <삭제>	
	사. 필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삭제>	
4.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4. 패류	가. <삭제>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전라남도 여주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전라남도 여주시 삼산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삭제>	

	마. 코끼리조개	<i>Panopea japonica</i>	지로 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i>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해조류	가. 개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	<i>Ecklonia cava</i> <i>Ecklonia kurose</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곰피	<i>Ecklonia stolonifera</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 대황	<i>Eisenia bicyclis</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 (진도박, 먹도박)	<i>Grateloupia spp.</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뜰부기	<i>Silvetia siliquosa</i>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26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i>Dentex tumifrons</i>	15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다.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i>Panulirus</i>	5센티미터 이하

	마. <삭제>		
	아. <삭제>		
5. 해조류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우뭇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삭제>		
	사. <삭제>		
	머. <삭제>		
2. 갑각류	다. <삭제>		
	라. <삭제>		

3. 패류		<i>japonicus</i>	
	마. 펼답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 미터 이하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산은 각장 10센티미 터 이하로 한다.

3. 패류	마. <삭제>		
	가.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